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㉔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. 세출에 이입한다.

##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 - ④ ( 생 략 ) ⑤ <u>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4조(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) 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u> ② <u>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는 임야 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,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, 취득,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.</u></p> 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, 세출) ① 공유 <u>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1. <u>공유재산(공유림 제외)의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 %</u> 2. <u>공유임야 매각대, 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 %</u></p>	<p>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① - ④ ( 현행과 같음 ) 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삭 제 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삭 제 )</p>

현행	개정(안)
<p>3. 국유재산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, 변상금등,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%</p> <p>4.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자원</p> <p>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p> <p>㉕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 <p>제36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( 삭제 )</p>